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932호
-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19년 8월 7일
- 라.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 2.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연구원을 설립하고, 주요 시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분석,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연구원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나. 이에 서울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출연 사무명: 서울연구원 출연

나. 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1)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4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 보고서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제1항

제4조(기금 및 출연금) ① 시는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다.

## 2) 추진 필요성

- 서울연구원은 서울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시책연구기관으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행정, 복지, 교통, 도시 재생, 도시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시정 주요 당면 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서울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다. 출연 사무내용

- 1)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 2)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원가계산 등의 수탁
- 4)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 5)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6) 자치구의 요청에 따른 자치구 행정과 자치구의회의 의정에 관한 연구

## 라. 출연 기관 개요

### 1) 연 혁

- '92. 1.15: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육성 조례」 공포
- '92. 10.1: 시정개발연구원 개원(강남구 논현동)
- '03. 1.27: 현 청사(서초구 서초동) 이전
- '12. 7.26: 서울연구원으로 명칭변경
- '14. 10.20: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조례」로 제명 및 일부개정

2)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3) 위치도



4) 규 모

- 조 직 : 원장, 부원장, 감사실, 1본부, 6연구실, 3센터

▶ 감사실, 기획조정본부, 도시사회연구실, 시민경제연구실, 도시경  
영연구실, 교통시스템연구실, 안전환경연구실, 도시공간연구실,  
도시정보센터, 도시외교연구센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인 력 : 정원 225명 / 현원 220명

(2019. 7. 31. 현재, 단위:명)

구분	계	원장	연구직	일반직	전문직	공무직
정원	225	1	148	35	25	16
현원	220	1	145	34	24	16
과부족	△5	-	△3	△1	△1	-

5) 지원시설

- 규 모: 지상5층, 지하1층 / 연면적 8,467.83m<sup>2</sup>
- 건축년도: 2003년
- 시설현황

층별	주요 용도
지하1층	정보자료실, 공동연구실, 중회의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전자기계실
1층	도시정보센터, 도시사회연구실, 공용전산작업실, 기기조정실
2층	원장실, 감사실, 기획조정본부, 시민경제연구실, 도시경영연구실, 대회의실, 중회의실
3층	도시공간연구실, 교통시스템연구실, 도시외교연구센터
4층	안전환경연구실, 여성휴게실
5층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1) '20년 출연금 편성액(안): 35,863백만원 ※ '19.7월말 현재
- 2) '20년 산출근거(안)

(단위: 백만원)

세입 예산			세출 예산		
계	44,710		계	44,710	
1. 서울시 출연금	35,863	80.2%	1. 연구사업비	12,146	27.2%
			연구과제	11,937	26.7%
2. 자체수입	8,847	19.8%	연구사업운영	209	0.5%
수탁사업비	7,800	17.4%	2. 경영사업비	6,333	14.2%
출판물판매수입	30	0.1%	3. 인건비	20,145	45.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250	0.6%	4. 예비비	236	0.5%
이월금	767	1.7%	5. 수탁연구비	5,850	13.1%

####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동의안의 개요

- 2020년도 서울시 세출예산에 서울연구원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나. 서울연구원의 현황

- 서울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에 대한 효율적 해결을 위해 주요 시책과제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정책을 연구·개발하는 출연기관임.
- 현재 1본부 6연구실 3센터<sup>1)</sup>에 연구직 145명을 포함해 220명의 정규직원과 정원외직원(연구과제 수행인력) 101명 등 모두 321명의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음(2019년 6월 기준).

#### 〈서울연구원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임 원	연구직	일반직	전문직	공무직
정 원	225	1	148	35	25	16
현 원	220	1	145	34	24	16
과부족	-5		-3	-1	-1	

※ 정원외 직원 101명(2019년 6월 현재 기준)

1) 서울연구원의 조직은 원장, 부원장, 감사실, 1본부(기획조정본부), 6연구실(도시사회, 시민경제, 도시경영, 교통시스템, 안전환경, 도시공간), 3센터(도시정보, 도시외교연구, 서울공공투자관리)로 구성됨.

- 연간 예산은 출연금과 수탁사업비를 포함한 자체수입 등 394억 9천 7백만원으로 약 230여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2019년 세출예산 기준).
- 최근 5년간 연구원의 연구실적을 보면 총 1,196건으로, 자체 연구 787건(정책연구 261건, 수시연구 256건 등), 수탁연구 294건, 협력연구 115건임.
- 2018년도에는 총 261건의 연구사업을 수행하여 박사 1명당 평균 3.7개의 연구실적을 보였으며, 평균 연구기간은 6.5개월이 소요되었음.

### 〈서울연구원 연도별 연구 수행 현황〉

(2019. 7. 31. 기준, 단위 : 건)

구분	계	자체연구					협력연구	수탁연구
		소계	정책	기초	현안	수시		
총계	1,196	787	261	133	137	256	115	294
‘19년(7월)	191	118	39	20	23	36	23	50
‘18년	261	179	66	29	36	48	21	61
‘17년	233	173	53	25	31	64	13	47
‘16년	263	170	57	31	24	58	34	59
‘15년	248	147	46	28	23	50	24	77

- 자체연구
  - ▶ 정책 :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회동향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 ▶ 기초 : 연구원 역량강화 및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 ▶ 현안 :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현안대응형 연구
  - ▶ 수시 : 신속한 현안 문제 해결 및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수시 검토 연구
- 협력연구 : 외부의 학계, 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연구
- 수탁연구 : 외부와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 다. 연구원에 대한 출연

- 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sup>2)</sup>와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sup>3)</sup>에 근거를 두고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출연금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2015년 184억원에서 2019년 298억원으로 62% 급증했음.
- 2020년은 전년도보다 20.1% 늘어난 358억원에 달하고 있는 바, 이는 ‘서울평화포럼 운영방안 연구<sup>4)</sup>’가 올해 대비 31억 5천만원, ‘자치구 구정연구단 파견 연구원(50명)에 대한 보수와 기관 성과급’이 12억 7백만원, 총액인건비 인상률(4%)과 성과급 반영으로 ‘인건비’가 6억 5천 4백만원으로 각각 증액되었기 때문임.

2)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3) 제4조(기금 및 출연금) ① 시는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다.

②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금을 둘 수 있다. 기금은 시, 자치구 및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4) 서울평화포럼은 평화 협력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 용서, 화해, 치유를 핵심으로 한 보편평화의 상을 논의하는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서울시의 위상 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



## 〈서울연구원 출연금 현황〉

(단위 : 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안)
184	209	219	236	298	358

- ‘서울평화포럼 운영방안 연구’는 작년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8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서울 평화 국제포럼”의 계속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40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하고 있음.
  
- 이 연구의 핵심은 ‘2020 서울평화포럼’으로,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 용서, 화해, 치유를 핵심으로 한 보편평화의 상을 논의하는 국제포럼 (2020.10월 예정)을 개최하는 사실상 행사성 사업임.
  
- 이 사업의 성격과 내용, 형식 모두에서 도시문제 해결과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인 “연구원”의 고유사업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향후 이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5)에 따라, “총사업비

5)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심사
2. 시·도의뢰심사
3. 중앙의뢰심사

가. 시·도의 사업비 300억원 이상 또는 시·군·구의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삭제 <2014. 11. 28.>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라. 시·도 또는 시·군·구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바.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에 해당되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

〈서울연구원 2020년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안)	증감액	비 고
총 계	39,497 (출연금: 29,844)	44,710 (출연금: 35,863)	5,213 (출연금: 6,019)	
연구사업비	7,887	12,146	4,259	
연구과제 수행	7,722	11,937	4,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연구과제 185건('19년 동일)</li> <li>• 서울평화포럼 운영방안 연구 4,000백만원 ('19년 850백만원, '19년 대비 3,150백만원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11.DMZ 및 서울광장(예정)</li> <li>- '20.10.12~14, 코엑스(예정)</li> </ul> </li> <li>• 구정연구지원센터 운영 기관성과급 등 2,980백만원 ('19년 1,773백만원, '19년 대비 1,207백만원 증액)</li> </ul>
연구사업 운영	164	209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연구실 및 3센터 운영비 (부서운영비, 과제개발회의비 등)</li> </ul>
경영사업비	5,788	6,333	545	
기 획	106	122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문위원회 등 회의운영비 등</li> <li>• 성평등 및 인권기반 조성 관련 인권경영 위원회 회의수당 및 실태조사 14백만원 신설</li> </ul>
대외협력	757	815	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언론보도 및 기획 등</li> </ul>
인사복지	1,668	1,739	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지원인력 증가('18년 7명→'19년 10명)에 따른 기관성과급(190%) 반영</li> <li>•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li> </ul>
후생복지	732	742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택적 복지비 및 상해보험 가입금액</li> </ul>
경영관리	572	594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물품구입, 유지비</li> <li>• 청사유지관리비</li> </ul>
도시정보	1,819	2,137	3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시스템(구정연구지원 웹사이트 등) 108백만원 증액</li> <li>• 전자도서관 구축 등 96백만원 증액</li> <li>• 전산장비 구입 등 114백만원 증액</li> </ul>
경상경비	866	926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운영경비</li> <li>• 사무관리비</li> <li>• 공공운영비 등</li> </ul>
인 건 비	19,491	20,145	6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직 정원 증원(223→225명)에 따른 225명 인건비</li> <li>• 총액인건비 인상률 4.0%, 성과급 190%</li> </ul>
예 비 비	481	236	△2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충원 인건비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세먼지 연구 3명(박사2, 석사1)</li> </ul> </li> </ul>
수탁연구비	5,850	5,850	-	

- 한편, 서울연구원은 서울의 가치혁신을 선도하는 씽크플랫폼으로서 시정관련 중·장기계획과 핵심연구 기획·발굴을 비롯한 각종 연구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외 교류와 연구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또한, ‘서울시 2018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주요 시책과제 연구 수행, 정책 활용 확대<sup>6)</sup>,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 등을 인정받아 최고점수를 받은 바 있음.
  - 기관장 평가(’17년 ‘A’등급, 87.77 → ’18년 ‘S’등급, 92.76)
  - 기관 경영평가(’17년 ‘나’등급 88.12 → ’18년 ‘가’등급, 90.20)
- 그러나, 연구과제 선정과 추진에 있어 서울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반면, 연구결과의 정책활용도는 73%에 불과하며, 연구역량 지수,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운영계획 등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연구원의 체질 개선 노력이 요구됨.
- 또한, 서울시 출연금에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추구해야 할 것임.
- 한편, 지난 제287회 정례회에서 무분별한 선심성·낭비성 출자 출연을

---

6) 연구결과의 서울시 정책활용도는 16년 68%에서 17년 73.1%로 향상되었음(2018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

방지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에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 하도록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 (2019.7.19.) 되었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출자·출연하는 금액이 전년보다 10%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타당성을 미리 검토 하고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상의 법령과 조례 개정은 서울연구원과 같이 전년 대비 10%를 넘는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과 타당성 검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소요예산과 산출근거 자료를 동의안과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의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임.
- 그러나 이번 동의안에는 소요예산과 산출근거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심의위원회 심의와 타당성자료 등을 누락하여 관련 안건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 강화된 동의안 심의 형식에 맞춰 사전 이행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임.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시우	02-2180-8056

## [참고자료 1] 관련 법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수익사업) 지방연구원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

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회계연도에 출자기관에 출자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그 출자기관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2.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2.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3.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지방 일간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체심사

가.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0억원(해당 관할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 이상인 시·군·구는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다. 시·군·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라. 시·군·구의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시·도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바. 시·도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2. 시·도의뢰심사

가. 시·군·구(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군·구는 제외)의 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삭제 <2014. 11. 28.>

다. 시·군·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라. 시·군·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3. 중앙의뢰심사

가. 시·도의 사업비 300억원 이상 또는 시·군·구의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삭제 <2014. 11. 28.>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라. 시·도 또는 시·군·구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 시설 신축사업

바.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 보고서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참고자료 2]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행정안전부)

###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 검토

#### □ 검토배경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14.5.28.개정, '16회계년도부터 적용)
- 출자·출연 사전의결에 대한 자치단체 질의에 대해 **우리부의 해석기준을 정립**하여 자치단체에 통보

#### □ 질의 및 검토의견

- **(질의1)** 출자·출연금은 예산 편성 및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어야 할 사안인데, 지방의회의 의결을 미리 받도록 한 취지는 **예산 편성 및 심의와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 **(답변)**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없이 장학재단에 출연하거나, 민간행사보조 사업을 출연금으로 편법으로 지원하는 사례 발생 (감사원지적 '11.3)

- **(질의2)** 미리 지방의회에서 **출자·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 **(답변)**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

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출자·출연은 자치단체장이 재정규모,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우선 순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 할 때,
-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 다만, 지방의회 의결안에 포함되지 않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은 곤란

○ (질의3) 매년 출자·출연해 온 기관 또는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경우도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 (답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미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취지로 신규 및 기존, 법정 의무 출연을 모두 포함

○ (질의4)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예산안 편성 전(혹은 지방의회 제출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 (답변) 예산편성 전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 불가피하게 사전의결안과 예산편성안을 지방의회에 함께 제출 (혹은 출자·출연 의결안이 먼저 제출되었으나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산안 의결 전에 출자·출연안이 먼저 의결되어야 함

< 지방재정법 내용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